

「2017 트레이드쇼, 제너레이션넥스트 서울」 사업

협 상 서

(재)서울디자인재단과 (주)에스팀모델은 「2017 트레이드쇼, 제너레이션넥스트 서울」 대행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을 이행하고, 협상결과 첨부된 협상내용을 (주)에스팀모델이 이행하기로 합의하며, 본 협상서의 내용은 용역계약 특수조건으로 간주하여 과업범위에 포함한다.

- 첨 부 : 1. 협상내용 1부.
2. 실행계획서 1부. 끝.

2017. 3.

(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 근 (인)

(주) 에스팀모델
대표이사 김 소 연 (인)

「2017 트레이드쇼, 제너레이션넥스트 서울」 개최

협상내용

(재)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주)에스팀모델(이하'사업자'라 한다.)은 「2017 트레이드쇼, 제너레이션넥스트 서울」 사업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서 협상을 진행하고자 한다.

□ 사업내용

1. 계약의 체결과 이행범위

- 「2017 트레이드쇼, 제너레이션넥스트 서울」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범위는 본 협상서(협상내용)와 협상보고서, 실행계획서 및 과업지시서 모두를 포함한다.
- 제안요청 보완사항 분석표는 재단의 제안요청 대비 제안안과 협상안의 보완사항, 추가 제안사항을 포함한다.
- 실행계획서는 과업산출물과 공정별 투입예산, 단계별 투입인력, 일정계획 및 중점관리항목을 포함한다.

2. 기획 및 실행안

- 사업자는 계약 전 실행을 위한 기획안을 제출하고 이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 후 실행 안이 완료되면 실행계획서, 산출내역을 재단에 제출하고 재단에 의해 승인된 최종기획과 내역에 따라 실행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또한 실행 전 과정에 걸쳐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예산

- 사업자는 재단에 제출한 '가격제안'의 내용을 준수하며, 이에 따른 사업비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 사업자는 제안 사업비(금 719,474,545원)의 한도 내에서 과업(이행)범위 일체를 행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1시즌(2017년 3월 예정), 2시즌(2017년 10월 예정)으로 진행되는 바,

사업자는 1시즌을 진행한 후 이에 대한 중간정산 자료를 정리하여 재단에 보고하며, 재단은 위 중간정산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해당 사업비 지급을 완료한다.

- 중간정산이 완료된 경우, 사업자는 위 '제안 사업비 예산'에서 중간정산을 통해 1시즌 시 활용된 총액을 제외한 예산으로 2시즌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예산변경은 사업추진 시 상호 협의하에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변경 할 수 있다.

4. 투입인력

- 사업자의 인력투입에 있어,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하여 적격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본 계약에 의거한 사업운영 시 참여인력 투입 및 변경은 계약시점의 투입인력 등급과 동일한 적격자로 대처함에 한하며, 재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재단은 운영상 사업자가 투입한 인력으로 인하여 업무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업자는 이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투입한 인력(일용직 포함)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지며 고용관계로 인하여 재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단독책임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고용관계에 따른 법령에 규정된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5. 일정관리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실행계획서에 기준하여 일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세부일정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재단은 사업자가 사업기간 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하거나, 사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실행계획서 상 합의한 주요일정 등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6. 업무진행

- 사업자는 협상이 완료된 과업대상 및 내용에 따라 세부실행계획을 재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단독이행방식으로 추진하며 계약이행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 사업관리

1. 사업비 정산

- 사업자는 사업비 정산 시, 재단에서 승인 또는 지정한 공인회계기관을 통해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산보고서에는 인건비 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 서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재단은 사업자의 사업비 부정사용 및 과오사용에 대해서는 반환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사업자에 있다.

2. 지식재산권의 책임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제안내용 등이 타인의 지식재산권(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향후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 일체의 책임이 있다.
-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산출물(이하 '본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재단에게 귀속되며, 사업자는 본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재단의 사전 서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운영

- 사업자는 본 사업의 추진현황 보고와 방법, 일시 등에 대하여 재단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다.
- 재단은 중요한 사안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거나 자문을 받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대한 회의 및 자문결과를 보고서로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재단은 운영상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중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 사업수행 시 추락, 화재,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있는 구축물과 작업의 경우 「작업 안전 관리자」상주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 이행하는 주체는 사업자이며, 문제 발생에 따른 일체의 책임 또한 사업자에게 있다.
- 사업자는 사업기간 내 사업공간의 보안 및 출입통제 계획을 세워 작업의 원활하고 안전한 사업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공간의 장비 및 실내 마감, 기물의 파손, 도난, 분실 등의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존 건축사항(도면 및 구축사항)의 미숙지에 의한 건축, 마감, 구조, 기계, 전기 등의 공사 간 구축간섭에 대한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 계약사항

-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77호, 2017.1.23)'을 따른다.
- 협약상의 의무는 상기 기술한 사업내용과 사업관리의 전 내용을 포함한다.
- 사업자가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며, 의무이행 입증의 책임은 사업자에 있다.

□ 기타사항(사업별 내용)

- 사업자는 이벤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재단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 조정 및 보완을 통해 최종 실행하도록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콘텐츠 변경 및 취소 등으로 사업비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변경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수립 및 실행해야 한다.
- 재단과 사업자 양측은 업무수행과정이나 업무수행이 완료된 후 업무를 통해 입수하거나 교환한 기밀(민감)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